#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차증권㈜

2. 조치일 : 2025. 5. 9.

3. 조치내용

| 대상 | 내 용 |
|---|---|
| 기 관 | 개선사항 4건 |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세부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객확인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

㈎ 고위험 고객 등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면서 해당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나,

고객이 추가정보를 '기타'로 선택하는 경우 '기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전산상 필수 입력사항으로 운영하지 않고, 고객확인 재이행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객인 경우 추가정보를 전산상 필수로 입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시 추가정보를 '기타'로 선택한 경우 세부내용 및 고객확인 재이행시 추가정보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추가정보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계좌개설시 계좌개설 신청서 및 고객거래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법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법인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나,

A부문에서 ㉮계약 등 계좌개설 없는 금융거래로 인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세부 업무지침 및 고객확인 양식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에 따라 고객확인 업무가 일관되게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계좌개설 없는 금융거래에 대해 일관된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지침 및 고객확인 양식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해 위험평가모형을 운영중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해 고객을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다른 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에도,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존고객 또는 기존고객의 추가 거래에 대해 신규고객의 위험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부적정하게 평가된 위험에 따라 고객확인을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모형의 위험요소 중 국가위험을 비정기적으로 변경 반영하고 있으나 그밖에 위험평가모형 평가결과의 적정성, 평가세부요소 및 가중치의 적정성 등 위험평가모형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위험평가 결과 및 고객확인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 대상 고객을 정확히 구분하여 내규에 반영하고, 위험평가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2) 사기이용계좌 거래 모니터링 미흡

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정지 등록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가 사기이용계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검토하는 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절차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사기이용계좌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여 사기이용계좌로 확정된 계좌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상품 등 위험평가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세부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 위험평가 생략 사유 등 위험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업무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위험평가가 주관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위험등급이 산정되었음에도 위험요소를 관리·경감하는 노력이나 별도의 검토절차 없이 출시하는 등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사전위험평가 업무절차의 운영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대상의 정의, 위험평가 생략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평가 결과가 '고위험'인 경우 위험요소를 관리·경감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4)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규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세부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다음과 같이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를 내규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고객확인 필요사항 및 거래거절·종료 절차 등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활동이 임의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

②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관련 보고제외 사유에 대한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절차가 임의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

③ 비대면 거래에서의 고객확인 관련하여 내규에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본인인증 및 실명확인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④ 내규에 고객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이 적정하게 식별 및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구체적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내규에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사항, 거래거절·종료 절차 및 방법 등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관련 보고제외 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③ 비대면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에서의 고객확인 관련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④ 고객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객위험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보완하여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